

##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기록업무(속기)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할 기록업무(속기)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일

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장

#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| 분 야                 |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 원 | 직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무부서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|--------|
| 기간제근로자<br>(기록업무-속기) | 2023. 7. 3.<br>~ 2024. 6. 28.<br>(예정) | 1 명 | ◦ 회의 기록<br>◦ 회의록 작성, 교정<br>◦ 회의록 게재 및 검수 등 | 의사담당관실 |

### 2 근로조건

- (근무기간) 2023. 7. 3.(월) ~ 2024. 6. 28.(금)
- (급 여) 1일 임금 86,400원 / 2023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기준 적용
- (근로시간) 주5일 40시간(09:00 ~ 18:00) / 주5일 만근 시 유급휴일 1일 부여
- (기 타) 4대 보험 가입

### 3 추진일정

| 채용공고                   | 응시원서<br>접 수             | 서류전형<br>합격자 발표            | 면접시험                 | 최종합격자<br>발 표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23. 6. 1.<br>~ 6. 8. | 2023. 6. 9.<br>~ 6. 13. | 2023. 6. 15.<br>(예정)/유선통보 | 2023. 6. 20.<br>(예정) | 3층 소통실<br>(예정) |

### 4 응시자격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
-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

## 결격 사유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5 | 선발방법

### ○ 【1 차】 : 서류심사

- (내 용) 응시자격 등 결격 여부 심사 후 면접대상자 결정
- (통 보)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면접일시, 장소 개별 통보

### ○ 【2 차】 : 면접시험

- (대 상) 1차 서류심사에서 면접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하여 면접심사
- (내 용) 정신자세 및 업무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(통 보)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개별 통보

## 6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

- (응시원서교부)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인터넷홈페이지(내려받아 사용)
- (접수기간) 2023. 6. 9.(금) 09:00 ~ 6. 13.(화) 18:00까지
- (접수처)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4층 의사담당관실 기록팀
- (접수방법)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 또는 우편(우체국 익일특급) 접수

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/ 반드시 접수처에 사전연락 후 송부

▷ 주소: (우35242)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.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4층 의사담당관(042-270-5197)

## 7 응시자 제출서류

- 이력서 1부 / 제1호 서식      ○ 자기소개서 1부 / 제2호 서식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/ 제3호 서식
-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     ○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경력증명서 1부(해당자)      ○ 주민등록초본 1부(공고일 이후 발행분)

## 8 기타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합격 결정 후에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(예: 졸업증명서)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  
※ 원본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.
- 서류심사 및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채용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면접합격자 중에서 평정 순위가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는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(☎ 042-270-5197)로 전화 바랍니다.